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다36249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다362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6. 13 선고 2002나6192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AA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변BA)

【피고, 상고인】 김C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CB 담당변호사 송BB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6. 13. 선고 2002나619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유

1. 계약이전결정 제2조 단서와 제8조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일단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KKK금융 주식회사(KL종금)로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이전되었으며, KL종금이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한 것은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근거한 것이지 별도의 약정에 의한 것이 아닌 점, KL종금이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에 의한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어음이 지급거절되자 이 사건 어음할인으로 인한 원화대출자산을 그 제외대상으로 분류하고 KM종금에 이 사건 어음할인으로 인한 채권 및 그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한 점과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의 경위, 목적, KL종금의 역할, NN합섬이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서 제2조 단서 중 ‘처음부터 이전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우선 외관상 이전대상인 자산 등은 KL종금에 모두 이전이 되지만 명세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이전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된 자산 등은 KL종금에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전시기를 일률적으로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시로 본다는 의미일 뿐,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일단 이전된 계약관계도 명세서의 작성시까지 그 귀속주체가 변동될 여지가 있어 KL종금이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형성하는 법률관계도 종국적으로는 KL종금 또는 경우에 따라 KM종금에 귀속될 수도 있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KL종금의 이 사건 어음할인은 KM종금을 대리 또는 대행하는 성격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근거한 법률관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의하면 NN합섬이 발행, 배서, 참가인수나 보증한 어음을 KM종금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의한 연대보증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KM종금이 KL종금에게 이 사건 이전결정서 제8조에 의한 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어음약정이 이전되지 않았는데도 KL종금이 임의로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였으니 피고는 보증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의 성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KM종금이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 제8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대한 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이 KL종금으로 이전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내린 계약이전결정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는 형식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 중 특정 부분을 제3자인 인수금융기관에게 양도 및 인수하게 하되, 이전되는 부채와 자산 가치와의 차액을 인수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 중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성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8807 판결 참조).

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는 그 후 개정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그 결정이 있을 때에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다음부터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계약이전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의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을 때에 인수금융기관이 이를 취득한다.’와 같은 규정이 없었는데,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 제2조는 계약이전의 범위에 관하여 ‘AA금융 주식회사는 계약이전 기준일 현재 AA금융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음의 자산, 부채 및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다음부터 ‘자산, 부채 등’이라 한다)를 KKK금융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KKK금융 주식회사는 이를 양수한다. 다만, 이전대상이 되는 자산, 부채 등이더라도 제3조의 명세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본조 각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는 자산, 부채 등은 처음부터 이전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 착오로 인하여 명세서 작성과정에서 누락되었음이 사후에 확인되는 자산, 부채 등은 처음부터 이전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만약 AA금융 주식회사와 KKK금융 주식회사 사이에 이전대상인 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의 결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계약이전결정으로 결정에 포함된 계약상 지위도 이전됨으로써 KL종금이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의한 계약상의 지위에 의하여 유효한 어음할인행위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약이전결정 제3조는 명세서의 작성기간을 계약이전결정일로부터 1월 내로 한정하고 있고,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작성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계약이전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발생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이전대상 제외사유인 ‘채무자 또는 중요한 연대보증인이 지급정지 중’인 상태가 계약이전결정일 이전에 발생한 자산 또는 부채에 의한 것인지, 계약이전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자산 또는 부채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전 결정에서 ‘처음부터’라고 한 것은 이전 제외사유가 그 결정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었던 경우에는 그 이전 결정시를 가리키고 이전 제외사유가 그 결정이후 조사기간 만료전에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발생시를 가리킨다고 하겠으므로 이 사건에서 KL종금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KM종금과 NN합섬 사이의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상의 지위를 이전받아 그때까지 이루어진 법률관계에 이어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행위를 한 후 계약이전 제외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발생시부터 그 계약은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그 제외 전에 이루어진 KL종금과 NN합섬 사이의 이 사건 어음에 대한 할인행위 역시 유효하고,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피고의 NN합섬에게 하였던 연대보증의 효력 역시 KL종금과 NN합섬 사이의 이 사건 어음에 대한 할인행위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며, 일단 이전 받은 지위에서 행한 KL종금의 법률행위의 효과도 KM종금에 이전 제외사유 발생시부터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인정에 증거법칙에 위반한 잘못이 없으며 그 사실관계에서는 원심판단의 설시는 다르나 그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계약이전결정서 제2조 단서 및 제8조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등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준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사의 책임제한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 당시 NN합섬의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원고가 NN합섬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마다 그들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에 발생한 이 사건 어음채무에 대하여는 그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은 기록중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는 1993. 10. 29. NN합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시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1995. 2. 28. 그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나 NN합섬의 이사로서 계속 근무하다가 1997. 2. 26. 퇴임한 사실, 피고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김EB가 1995. 2. 28.부터 1998. 2. 28.까지 NN합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김EC과 신EA이 1998. 3. 14.부터 2000. 2. 23.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 당시 개인으로는 피고와 김EC, 법인으로는 DA상사가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피고는 NN합섬의 대표이사였지만 그 당시 김EC은 법인등기부상 NN합섬의 이사나 임원은 아니었던 사실, KM종금은 피고가 NN합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인 1995. 4. 28.경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을 심의하면서 연대보증인들을 교체하지 않았으나 거래조건 중 개인연대보증인들의 이름 앞에 ‘이사’라고 그 직위를 표시한 사실, KM종금은 1996. 5. 4.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일부 거래조건을 변경하였는데 주식회사 DA상사의 보증을 해지하면서도 다른 개인연대보증인들은 변경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러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 사건 채무는 피고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사실을 KM종금이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을 심의하거나 거래조건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은 점, 피고가 대표이사를 사임하고도 KM종금에 보증인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위의 어음거래약정에 의한 보증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보증책임의 범위가 피고가 NN합섬의 대표이사직에 있을 때 발생한 채무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연대보증하게 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으며 그 사실관계에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그 판단에 이사의 책임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약관의 무효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개별적 합의는 그 형태에 관계없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어음거래약정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약관을 포함하고 있는 정형적인 계약서 중 계약기간이나 거래금액 등에 관한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존속기간과 거래금액을 보충하여 기재할 수 있는 난을 마련하여 두어 당사자의 구체적 합의에 의하여 그 내용이 결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 무기한의 존속기간 및 무한도의 거래한도를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8353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 제18조는 KM종금이 해지하거나 또는 KM종금과 NN합섬 사이의 해지합의가 있기 전까지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위 어음거래약정을 해지할 권리가 전혀 없으며, 이러한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KM종금이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을 해지하거나 KM종금과 NN합섬이 합의해지하여야만 하는 바, 이러한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고,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되어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은 피고의 재직중에 발생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은 기록중의 증거들에 의하여, KM종금과 NN합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서는 KM종금에 의하여

마련되어 NN합섬은 물론 KM종금과의 어음거래를 원하는 다른 기업체들과도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고 있는 사실, KM종금과 NN합섬은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 이전에도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어음거래를 하여 왔으나 거래한도액을 증액하면서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을 새로이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존속기간은 KM종금의 해지 또는 KM종금과 NN합섬의 해약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 사실, NN합섬이 1993. 12. 7.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데 그 이사회결의서에 차입 또는 보증기간을 차입 또는 보증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로 한 사실, NN합섬은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KM종금과 어음거래를 계속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하여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나아가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 중 보증기한에 대한 조항이 위 법 제9조 제5호에 위반하여 무효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KM종금이 NN합섬과 1993. 12. 22.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을 하면서 기한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KM종금의 해지 또는 KM종금과 NN합섬의 해약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 채 그 거래한도액을 263억 원으로 하였고, 그 어음거래약정시 NN합섬의 대표이사인 피고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어음거래약정으로 인하여 NN합섬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어음거래채무 중 거래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경우에 따라 피고에게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지권이 인정될 수도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단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인 거래의 보증약정이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보증약정 중 보증기한에 대한 약정조항이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장기로 하여 고객에게 부담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에게 보증책임을 묻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무효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들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